

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 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 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 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

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“건축법”을 각각 “「건축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건축법시행령”을 각각 “「건축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보조 또는 용자지원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)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</u></p> <p>제11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</u></p> <p>제11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 <p>2.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</u>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